

주정부의 의료 및 장기요양치료 비용 반제를 위한 재산 회수

Estate Recovery Repaying the State for Medical and Long Term Services and Supports

재산 회수란 무엇입니까?

- 주 법률 (chapters RCW 41.05B 및 43.20B)에 따라 일부 의료 및 장기요양치료지원 (LTSS)에 해당하는 귀하의 재산을 Department of Social and Health Services (보건사회부, DSHS)와 Health Care Authority (보건국, HCA)에 반제해야 합니다.

재산이란 무엇입니까?

- 사망 당시 수혜자가 소유한 재산 또는 법적인 이권이나 물권 등으로 다음을 들 수 있습니다.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자산과 재산이 포함됩니다.
 - 집, 토지,
 - 은행 계좌,
 - 주식 및 채권,
 - 개인 재산,
 - 비공증 자산 및 종신 부동산.

수혜자의 재산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무엇입니까?

- 사망 당시 수혜자가 소유한 재산 또는 법적인 이권이나 물권 등입니다. 예를 들어 수혜자의 부모, 배우자, 주정부에 등록된 동거녀(남) 또는 자녀의 단독 소유 자산이 있습니다.

재산 회수가 면제되는 재산은 무엇입니까?

- 특정 부족 자산,
- 특정 정부 보상금 및
- 공인 장기 요양 파트너십 정책을 통해 보호된 자산

사망 시 수혜자에게 아무런 재산이 없을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?

- 이 경우 재산회수를 하지 않습니다.

재산회수에 포함되는 의료 및 LTSS 비용은 무엇입니까?

- 55세 이후 DSHS나 HCA에서 지불한 연방 지급 LTSS 비용
- 연령에 관계 없이 주정부 자금으로 DSHS에서 지불한 비용, 단 다음은 제외:
 - 성인보호서비스
 - 발달장애국(DDA)이 허가한 보충 보증 지급액,
 - 범죄자 재등록 커뮤니티 안전 프로그램 서비스,
 - 자원봉사 서비스,

재산회수에 포함되지 않는 의료 및 LTSS 비용은 무엇입니까?

- 연방정부 메디케어 저축프로그램(Medicare Savings Program)에서 HCA가 지불한 비용
- 귀하께서 LTSS를 받지 않으시는 경우, HCA가 지급하는 의료비.

재산 회수는 언제 지연되니까?

- 생존 배우자가 있을 경우,
- 21세 미만의 자녀가 남아있을 경우,
- 수혜자 사망 시 맹인 또는 장애 자녀가 생존해 있을 경우 또는
- 상속인이 심한 경제적 부담에 따른 지연을 신청하고 DSHS가 이를 승인한 경우, 심한 경제적 부담이 있는 동안 지연됩니다.

DSHS에서 심한 경제적 부담(undue hardship)을 승인할 수 있는 경우?

- 재산회수를 할 경우 수혜자 상속인이 자택에서 살지 못하고 다른 곳에서도 살 수 없는 경우,
- 재산이 수혜자의 상속인에게 소득을 산출할 수 있는 유일한 자산인 경우, 또는
- 주 정부에 등록된 생존 동거인일 경우

요양원(medical facility)에 거주하고 있는 수혜자로서 자택으로 귀가할 것으로 예상되지 않는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?

- 이 조치는 “재산 회수”에 해당하지는 않지만, DSHS는 2005년 조세평등과 재정의무법(Tax Equity and Fiscal Responsibility Act, TEFRA)에 따라 수혜자의 주택에 사망 전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.
- 이 법에 따라 DSHS는 수혜자의 사망 전에 자택에 유치권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.
- 치료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수혜자만이 자택에 사망 전 유치권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.
- DSHS의 유치권이 설정된 자택을 수혜자가 매각 처분할 경우, DSHS는 주택매각 수입에서 의료비와 LTSS 비용을 회수합니다.
- DSHS는 수혜자의 배우자, 주정부에 등록된 동거인 또는 21세 미만 부양 자녀나 형제가 그 집에 살고 있을 경우 유치권을 제기하지 않습니다.
- DSHS는 수혜자가 자택에 복귀하면 유치권을 해제합니다.

상세 정보는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까?

- CLEAR(Coordinated Legal Education, Advice and Referral Line)의 무료전화 1-888-201-1014로 문의해주시오.
- 유산 계획 및 의료혜택 지원 규정 등을 잘 아는 변호사와 상담하십시오.
- www.washingtonlawhelp.org에서 “주에서 지급한 의료 서비스에 따른 재산 회수(Estate Recovery for Medical Services Paid for by the State)”를 읽어주시오.
- 알래스카 원주민이나 미국 인디언의 재산 회수 예외는 “미국 원주민 및 알래스카 원주민 자산 소유자: 재산 회수 면제(Native American and Alaska Native Property Owners: Exemptions from Estate Recovery)”를 www.washingtonlawhelp.org에서 확인해주시오.
- 챕터 RCW 41.05A 및 43.20B, 챕터 182-527 WAC를 읽어주시오.